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검찰이 우리처로 (주)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약사법」 제62조제2호 및 제3호 위반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니,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동 정보사항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소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속보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위해정보과장, 의약품정책과장, 의약품관리과장, 임상제도과장,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백신검정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바이오심사조정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생물제제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험약제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 법무부장관(의료과장), 법무부장관(소년보호과장),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보건건강과장), 대전광역시(보건의료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울산광역시(식의약품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보건정책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경기도지사(보건의료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식의약품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질병관리본부장(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약학정보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장, 한국YMCA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장, 한국소비자교육원장, 녹색소비자연대장, 소비자시민모임장, 한국부인회총본부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장

보건연구관에 정자	승호선	사무관	이경욱	과장	전결 2020. 4. 17. 문은희
협조자					
시행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2284	(2020. 4. 17.)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660	팩스번호	043-719-3650	/ paradiso99@korea.kr / 비공개(5)	